

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06일

신당제5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전 *성	전 *성 1930-07-07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4길 (신당동)	직권말소 2023-11-06
장 *순	장 *순 1951-10-01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4길 (신당동)	직권말소 2023-11-06
조 *례	조 *례 1951-06-21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2길 (신당동)	사망말소 2023-11-06